

「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)

### 가. 제안이유

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 이후 ‘평창유산재단’ 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○ 정의 신설(안 제2조 제3호)

- “유산사업 단체”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#### ○ 용어 변경

- 평화 → 올림픽

- 기념사업 → 유산사업
- 평화올림픽 → 평창올림픽
- 평화정신 → 평창올림픽정신
- 2018평창 기념재단 → 유산사업 단체
- 사무국 → 사무처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 개정은

‘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’에서 ‘평창유산재단’ 으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평창올림픽 정신 및 사업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는 것으로,

올림픽 유산사업은 지역사회 내 핵심사업이고,

평창올림픽 레거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,

이를 위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기반과 사업방향을 종합적으로

재정비하려는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령 위반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,

개정 이후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미래지향적인 올림픽 유산사업이

다양하게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

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유산사업 단체”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평화의 가치”를 “올림픽의 가치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올림픽기념사업·문화관광·교육체육·산림부서의 장”을 “올림픽체육·관광문화·인재육성 관련 부서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·기념”을 “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)”을 “(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”를 “유산인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, 평창올림픽이 남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”을 “평창올림픽 정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을 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평화올림픽”을 “평창올림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)”을 “(유산사업 단체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(이하 “기념재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조례 제2조 제3호의 유산사업 단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념재단”을 “유산사업 단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념재단”을 “유산사업 단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”를 “유산사업 단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평화”를 “평창올림픽 정신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유산사업 단체”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포츠를 통한 <u>평화의 가치</u>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<u>올림픽의 가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올림픽기념사업·문화관광·교육체육·산림부서의 장으로</u>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<u>제3장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</u></p>	<p>제5조(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올림픽체육·관광문화·인재육성 관련 부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장 <u>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</u></p>

계승·기념

제6조(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)

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 성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)

① 지역 시민사회 등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·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
3. (생략)

제6조(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) -

----- 유산인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, 평창올림픽이 남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7조(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)

① ----- 평창올림픽 정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-----  
-----  
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평창올림픽-----  
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)

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(이하 “기념재단”이라 한다)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념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)

① (생략)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(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한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념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0조(국제행사 등 유치·개최)

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시설의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8조(유산사업 단체 지원) ① --

-----  
----- 조례 제2조 제3호의 유산사업 단체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유산사업 단체-----.

제9조(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유산사업 단체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국제행사 등 유치·개최)

① -----



